

신구조문대비표

「통계법」

통계법 [시행 2025. 10. 1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, 타법개정]	통계법 [시행 2026. 7. 22] [법률 제21575호, 2026. 4. 21, 일부개정]
제5조의2(국가통계위원회) ①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5조의2(국가통계위원회) ①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 이 된다.	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 이 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